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변경 대비표

현행	변경안	비고
<p><신설></p>	<p><u>부칙< 2024.4.1. 개정 ></u> <u>제 1 조 (시행일)</u> <u>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u></p>	
<p>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 2 조(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 <신설></p> <p>제 3 조(수수료의 징수) ① ~ ⑤ (생략) <신설></p> <p><신설></p>	<p>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 2 조(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 <u>2. 운용손익수수료: 본 부속협정서 제 3 조제 7 항에 따른 수수료</u> 제 3 조(수수료의 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단, 만일 가입자가 '24년 4월 1일 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24년 4월 1일부터) 제 2 항 내지 제 5 항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에 추가로 20%의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u> <u>⑦ 회사는 가입자가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계산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제 7 조의 3 에 따른 동일한 사전지정운용방법(초저위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제외)으로 운용하는 경우 동조 제 2 항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적립금의 운용손익에 연동하여 산정하는 운용손익수수료를</u></p>	<p>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 4 조제 3 호 다목</p> <p>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 5 조</p>

추가로 반영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수익률이 운용손익 측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인 [별표 1]에 따른 기준지표 수익률에 미달하거나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운용손익수수료율 0.01%p 를 운용관리수수료율에서 차감합니다.

가.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높은 경우: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

나.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율 - 0.01%p

1. 본항에 따른 운용손익수수료는 '24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가입자의 계산기간부터 적용합니다(즉, '24년 4월 1일 전에 가입자의 계산기간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계산기간부터 적용합니다.)

2. 가입자가 계산기간동안 적립금이 복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경우에는 각 사전지정운용방법별로 구분하여 운용수익률을 산정합니다.

[별표 1]

사전지정운용방법 위험등급	기준 지표
저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금리 + 1%p
중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금리 + 2%p
고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금리 + 3%p

가. 사전지정운용방법별 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올림합니다.

나. 기준지표는 계산기간 시작월 말일자에 해당하는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의 금리에 위험등급에 따라 저위험은 1%p, 중위험은 2%p, 고위험은 3%p 를 더하여 산출하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기준지표를 적용합니다.

[예시] 가입자의 수수료 납입 계산기간이 2024년 4월 1일에 개시될 경우, 해당 개시일부터 1년 동안(즉, 2025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경우, 기준지표 대비 해당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운용손익수수료를 적용한 가입자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본 예시에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는 고려하지 않음)

<u>일자별</u> <u>적립금 자산</u> <u>평가액</u> <u>(사전지정운</u> <u>용방법에</u> <u>의하여</u> <u>운용된</u> <u>일시부담금</u> <u>에 한함)</u>	<u>운용수익률</u> <u>의</u> <u>기준지표를</u> <u>초과하는</u> <u>경우</u>	<u>운용수익률</u> <u>의</u> <u>기준지표와</u> <u>동일한 경우</u>	<u>운용수익률</u> <u>의</u> <u>기준지표</u> <u>미만인</u> <u>경우</u>
1억원 미만	0.18%	0.17%	0.17%
3억원 미만	0.17%	0.16%	0.16%
3억원 이상	0.14%	0.13%	0.13%

⑥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성자산이 있는 경우 현금성자산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현금성자산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입자의 별도의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⑦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⑧ 제 2 항 내지 제 6 항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⑨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4. (생략)

⑧ 운용관리수수료(제 7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운용손익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는 현금성자산이 있는 경우 현금성자산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현금성자산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입자의 별도의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⑨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⑩ 제 2 항 내지 제 7 항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⑪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4. (생략)

~